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587
----------	------

2021년 9월 8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년 8월 11일, 오현정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1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302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1년 9월 8일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오현정 의원]

가. 제안이유
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등 보훈 관계 법령 등에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 정한 보훈대상자 중, 아직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훈대상자를 감면규정에 포함하여, 공원 입장료 면제 대상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훈대상자를 예우 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1) 보훈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 정한 보훈 대상자 중, 현행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 제20조제1항에서 규정되지 않은 입장료 면제 대상자를 추가함(안 제20조제1항9호~13호).
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별도 첨부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[수석전문위원 : 이재효]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하여 보훈대상자 중 현재 까지 동 조례 공원입장료 면제 대상에 규정되지 않은 대상자를 추가하여 입장료 면제 대상 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과 그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보장되도록 보훈정책을 수립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관련 법률¹⁾에 따라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음.
- 한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 및 [별표10]에는 감면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을 정하고 있으며, 시설로는 고궁, 공원, 기념관, 박물관, 미술관, 수목원 등이 있음.

법령해석례²⁾에 따르면 ‘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’의 의미는 공원 안에 설치된 ‘공원시설’이 아닌 ‘공원’ 자체 시설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면제되는 이용료는 공원의 입장료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된 바 있음.

1) 보훈관계 법령

법령	약칭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	국가유공자법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	독립유공자법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	참전유공자법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	고엽제법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	5.18유공자법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	특수임무유공자법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	의사상자법
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	국군포로송환법

2) 법령해석례, 법제처 14-0366, 2014. 8. 26., 국가보훈처

- 동 조례에는 현재 공원입장료(별표1)³⁾와 공원시설 이용료(별표2)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는바, 본 조례안과 같이 상위법령상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자로 정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해 공원 내 공원시설 이용료가 아닌 공원입장료를 감면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음.

법제처 14-0366 해석례, 2014. 8. 26.

…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별표 10에서는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(제5호), 국공립 수목원(제6호), 국공립 자연휴양림(제7호), 국공립 공연장(대관공연은 제외함, 제8호), 국공립 공공체육시설(제9호)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, 이는 위 별표 10에 열거된 각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각각의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고, 위 별표 10 제2호에 따라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로서의 국공립 공원이란 국공립 공원에 설치된 “공원시설”이 아닌 **국공립 공원 자체**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**이므로**,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면제되는 국공립 공원의 이용료는 **국공립 공원의 입장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**, 「자연공원법」에서 그 징수를 허용하고 있는 **모든 “공원시설”의 사용료까지 반드시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.**

3)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 [별표 1]

공원입장료(제15조제1항 관련)

공 원 별		사용기준	금 액(원)
서울 대공원	동물원	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	3,000~6,000 2,000~4,000 1,000~2,000
	테마가든 (어린이동물원 및 장미원)	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	2,000~4,000 1,500~3,000 1,000~2,000
서울식물원	온실 및 주제정원	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	5,000~10,000 3,000~7,000 2,000~5,000
※(주) ○ 어린이 : <u>6세 이상 12세 이하</u> ○ 청소년 : 13세 이상 18세 이하 ○ 어 른 : 19세 이상 65세 미만 ○ 단 체 : 30인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			

[붙임]

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 [별표 2]

공원시설 이용료(제15조제1항 관련)

공원 별	종 별	사용기준	금 액(원)		비 고	
			체육경기	기타행사		
10 번	잔디광장	1㎡당, 2시간	20~40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토, 공휴일은 이용료 30% 가산 야간에는 이용료 30% 가산(토, 공휴일은 제외)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 풋살경기장은 청소년 이용시 30% 할인, 어린이는 무료. (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% 이상일 때 적용) 평일 단체 이용시 30% 할인 입소일(1박2일 기준)이 공휴일이 아닌 월~목요일인 경우 20인(야영장소 5면) 이상 이용시 30% 할인 여리행위에 한함. 다만,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. 	
	일반운동장(광장)		5~10	10~20		
	축구장	잔디	120,000~156,000	300,000~390,000		
		인조잔디	55,000~82,500	110,000~143,000		
	풋살경기장	10인용	25,000~32,500			
		6인용	15,000~19,500			
	테니스장	실외	1면당, 2시간당	8,000~16,000		
		실내	1면당, 2시간당	25,000~37,500		
	파크골프장	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	4,000~6,000 3,000~4,000 2,000~3,000			
	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	클럽(1회당, 개당)	1,000~2,000			
	야영장(캠핑장)	야영장소 1회당	10,000~30,000			
		전기 1회당	3,000~5,000			
	야영장(캠핑장) 물품대여료	야영텐트 1회당	5,000~20,000			
		1인용매트 1회당	1,000~1,500			
사진·영상 촬영녹화	최초 1시간 초과시간당	13,000~19,500 6,500~13,000				
공원이용 프로그램참가비	1회당 (1일당)	1,000~20,000				
강의실	1㎡당, 1시간당	200~300				
공연장 (복합문화공간 포함)	1㎡당, 1시간당	100~200				

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- 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용·수익허가 된 경우에는 협약기한까지 적용 - 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 	
	야외무대	2시간당	100,000~150,000		
	청소년 체험의 숲	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	8,000~12,000 5,000~8,000 3,000~5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평일 단체 이용시 30% 할인 ◦ 키 140cm 이상 	
	국공장	1일(3시간)	2,000~4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30% 할인 ◦ 청소년·어린이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. 	
		1개월	20,000~40,000		
	입장권 발매행사	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	입장권 발매총액의 10~15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시정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◦ 장소 이용료, 점용료는 별도징수 	
고신(10면)	차량통행료	승합자동차 (16인승이상)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 (15인승이하)	3,000 ~ 6,000 2,000 ~ 4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순환버스·시티투어버스·긴급 및 통행허가차량·장애인콜택시·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은 무료 	
서울대공원	성인 야구장	1일	70,000~91,000	200,000~26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토, 공휴일은 이용료 30% 가산 ◦ 야간에는 이용료 30% 가산 (토, 공휴일은 제외) ◦ 야간 이용시 전기료 별도 납부 ◦ 전광판 이용시 전광판 이용료 별도 납부 ◦ 리틀야구장은 주간만 운영
		3시간	42,000~54,600		
	리틀 야구장	1일	35,000~46,000	100,000~130,000	
3시간		21,000~27,300			
	서울대공원 캠핑장	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	2,000 ~ 4,000 1,500 ~ 3,000 1,000 ~ 2,000		

[붙임] 관계법령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

제86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.

1.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
 2.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 3.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·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-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.
-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

제8조의3(고궁 등의 이용지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·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.

1.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
2.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

제52조(고궁 등의 이용 지원)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.

1. 5·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
2. 5·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5·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3.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·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

제58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국가유공자”는 “특수임무유공자”로, “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”은 “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”으로 본다.

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4 및 제2조

제15조의4(고궁 등의 이용지원)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,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억류지출신 포로가족”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,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5. “등록포로”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를 말한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의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10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1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2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13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요금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20조(요금의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「<u>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10. 「<u>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/u>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11. 「<u>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12. 「<u>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13. 「<u>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